무배당수호천사 5 배더행복한 종신보험

동양생명보험주식회사

사 업 방 법 서

(사업방법서 별지)

무배당수호천사 5 배더행복한종신보험

1. 보험종목의 명칭

| | • | | | | | |
|------------------------|---------|--------|----------------|--|--|--|
| 보험종목의 명칭 | 상품형태 | | | | | |
| 무배당수호천사 5 배더행복한종신보험 | | 해약환급금 | | | | |
| | 보장형 | 일부지급형Ⅱ | | | | |
| | 100 | 표준형 | 일반심사형 간편심사형 | | | |
| | UL 종신전략 | 환형 | | | | |

주 1) 다만, UL 종신전환형은 보장형 계약에서 전환하는 계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상품임

주 2) 표준형은 비교 안내를 위한 상품으로 판매는 하지 않음

2.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가입나이 및 보험료 납입주기

1) 보장형

| 구분 | 보험기간 | 보험료 납입기간 | 가입나이 | 보험료 납입주기 | |
|-------|------|----------|-----------|----------|--|
| 일반심사형 | 종신 | 15 년납 | 2 H 6 H | 의나 | |
| 간편심사형 | 중인 | 15 년급 | 25 세~65 세 | 월납 | |

2) UL종신전환형

| 보험기간 | 보험료 납입기간 | 전환나이 | 보험료 납입주기 |
|------|----------|-----------|----------|
| 종 신 | 일시납 | 25세 ~ 65세 | 일시납 |

3. 의무가입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4. 배당에 관한 사항

배당하지 않음

5. 보험료에 관한 사항

가. 보장형

이 보험의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된 보험료로 한다.

나. UL 종신전환형

1) 기본보험료

UL종신전환형 계약으로 전환시 전환금액을 말한다.

※ 전환금액 : 보장형 계약의 전환시점 해약환급금(보험계약대출원금과 이자를 차 감한 금액 기준, 특약의 해약환급금은 제외)

2) 추가납입보험료

기본보험료 이외에 계약 전환 후부터 보험기간 중에 수시로 납입하는 보험료를 말한다.

3) 보험료의 납입한도

- 가) 기본보험료와 추가납입보험료를 합하여 보험기간 중 납입할 수 있는 보험료의 총한도는 기본보험료의 200%로 한다.
- 나) 보험기간 중 납입할 수 있는 추가납입보험료의 총한도는 기본보험료의 100%로 한다. 추가납입보험료의 연간 납입한도는 다음과 같다.
 - 기본보험료 × 10%
- 다) 특약이 부가된 경우 특약보험료는 '가)' 및 '나)'의 보험료 납입한도에서 제외하며, 중도인출이 있을 경우에는 '가)' 및 '나)'의 보험료 납입한도에 인출금액의 누계를 더한 금액을 납입한도로 한다.

6. 보험료 할인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7. 보험료 선납에 관한 사항

가. 보장형

보험료의 선납은 당월분을 제외하고 최대 6개월분까지 가능하며, 3개월분 이상의 보험료를 선납하는 경우 보험료를 산출할 때 적용하는 이율로 할인하여 계산한다.

나. UL종신전환형

8.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 관한 사항

- 가. '15. 보험료 납입최고(독촉)기간에 관한 사항'에 따라 보험료 납입기간 이내에 월납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약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약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다.
- 나. 회사가 '가'의 청약을 승낙한 때에는 계약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특약이 부가된 경우 특약보험료 포함)에 '9. 연체이율에 관한 사항'에서 정한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하여야 한다.

9. 연체이율에 관한 사항

연체보험료에 대한 연체이율은 연체기간에 대하여 평균공시이율+1%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하는 이율로 한다.

10. 중도인출에 관한 사항(UL 종신전환형 계약에 한함)

- 가. 계약자는 UL 종신전환형 계약의 보험기간 중 회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나'에서 정한 인출가능금액 한도 내에서 보험연도 기준 연 12 회까지 계약자적립액을 인출할수 있으며, 총 인출금액은 계약자가 실제 납입한 보험료 총액(전환금액 및 전환 이후 추가납입보험료)을 초과할 수 없다.
- 나. 1 회당 인출가능금액은 「계약자적립액에서 해약공제액을 차감한 금액」(보험계약대 출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 기준, 특약에 대한 해약환급금은 제외)의 50% 이하로 한다.
 - 다만, 계약자적립액의 일부를 인출하기 위해서는 인출 후 계약자적립액이 기본보험료의 30%이상이어야 하며, 인출 후 '이미 납입한 보험료'의 계산은 '17. 이미 납입한 보험료의 계산에 관한 사항'에 따른다.
- 다. 계약자적립액의 인출은 추가납입보험료에 의한 계약자적립액에서 우선적으로 가능하며, 추가납입보험료에 의한 계약자적립액이 부족한 경우에 한하여 기본보험료에 의한 계약자적립액에서 인출이 가능하다.

11. 공시이율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12. 보험계약대출에 관한 사항

- 가. 계약자는 이 계약의 해약환급금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대출(이하 '보험계약대출'이라 합니다)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순수보장성보험 등 보험상품의 종류에 따라 보험계약대출이 제한될 수도 있다.
- 나. 계약자는 '가'에 따른 보험계약대출금과 보험계약대출이자를 언제든지 상환할 수 있으며, 상환하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보험금, 해약환급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에 지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할 수 있다.

13. 해약환급금 일부지급형표에 관한 사항(보장형 계약에 한함)

- 가. 해약환급금 일부지급형 II은 계약이 해지될 경우 표준형의 해약환급금 대비 적은 해약환급금을 지급한다.
- 나. 표준형의 해약환급금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 해지율을 적용하지 않고 계산한다.
- 다. 해약환급금 일부지급형 II의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아래의 기본해약환급금을 해약환급금으로 지급한다. 다만, 유지보너스 계약자적립액이 존재할 경우 해약환급 금은 기본해약환급금에 유지보너스 계약자적립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 구 분 | 기본해약환급금 |
|---|-----------------------------|
| 계약일 ~ 10 년 경과시점 계약해당일 전일 | 표준형 기본해약환급금의 50% |
| 10 년 경과시점 계약해당일 ~ 납입기간 경과시점 계약해당일 전일 | 표준형 기본해약환급금의 95% |
| 납입기간 경과시점 계약해당일 ~ | 납입기간 경과시점 표준형 기본해약환급금의 100% |

라. 회사는 계약체결시 해약환급금 일부지급형표 및 표준형의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환급률 포함) 수준을 비교하여 안내한다. 다만, 표준형은 해약환급금 일부지급형표의 보험료와 해약환급금 비교를 위한 상품으로 별도로 가입할 수 없다.

마. 회사는 해약환급금 일부지급형표의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에게 '해약환급금 일부 지급형표' 내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하고 (별첨 1)에 따른 별도의 확인서를 받는 다.

14. 월대체보험료에 관한 사항(UL종신전환형 계약에 한함)

해당월의 위험보험료 및 부가보험료의 합계액을 말하며, 월계약해당일에 해약환급 금(보험계약대출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으로 특약의 해약환급금은 제외된 금액)에서 공제한다.

15. 보험료 납입최고(독촉)기간에 관한 사항

- 가. 계약자가 제 2 회 이후의 기본보험료(특약보험료 포함)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아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에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납입최고(독촉)기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최고(독촉)기간은 그 다음날까지로 한다)으로 한다.
- 나. UL종신전환형으로 전환된 계약에 대해서는 중도인출 등으로 해약환급금(다만, 보험계약대출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으로 특약의 해약환급금은 제외된 금액)에서 월 대체보험료를 충당할 수 없게 된 경우 월계약해당일의 다음날부터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납입최고기간의 마지막날이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최고(독촉)기간은 그 다음 날까지로 한다)으로 한다.
- 다. '가' 및 '나'의 경우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최고(독촉)하고, 납입최고(독촉)기간 안에 기본보험료(특약보험료 포함) 또는 추가납입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 계약을 해지한다. 다만, 해지 전에 발생한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하여 회사는 보상한다.

16. 계약자적립액의 계산(UL 종신전환형 계약에 한함)

UL 종신전환형 계약의 계약자적립액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기본보험료를 산출할 때 적용하는 이율로 일자계산에 의하여 적립한 금액으로 한다.

17. 이미 납입한 보험료 등의 계산에 관한 사항

가. 보장형

- 1)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계약자가 회사에 납입한 보험료(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 납입이 면제된 보험료를 포함한 금액으로 특약보험료는 제외한 금액)를 말합니다.
- 2) '1)'에도 불구하고 계약자가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한 경우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아래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된 보험료와 해당 감액 이후에 납입된 보험료의 합계를 말한다.
 - 가) 감액 직후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

나) 「감액 직전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해당 감액 전에 감액이 발생한 경우 '가)'의 방법에 따라 계산된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말한다.

나. UL종신전환형

- 1) UL 종신전환형 계약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전환금액 및 전환 후 추가납입보험료의 합계를 말하며(다만, 특약보험료는 제외), 중도인출이 있을 경우에는 전환금액 및 전환 후 추가납입보험료의 합계에서 인출금액의 합계를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계약자적립액에서 특약보험료(계약관리비용(기타비용) 제외)를 공제한 경우 그 공제된 특약보험료(계약관리비용(기타비용) 제외)는 이미 납입한보험료에서 차감한다.
- 2) '1)'에도 불구하고 계약자가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거나 중도에 계약자적립액을 인출한 경우의 기본보험금액 계산시에 적용하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아래에 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된 보험료와 해당 감액 또는 인출 이후에 납입된 보험료의 합계를 말한다.
 - 가) 감액 이후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

나) 중도인출 이후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

= 중도인출 전 '이미 납입한 보험료' x---

중도인출시 계약자적립액

다) 「감액(또는 중도인출) 전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해당 감액(또는 중도인출) 전에 감액(또는 중도인출)이 발생한 경우 가) 및 나)의 방법에 따라 계산된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말한다.

18. UL종신전환형 계약으로의 전환에 관한 사항

- 가. '보장형 계약'의 경우 유효한 계약에 한하여 계약일로부터 10년이 경과된 이후에 'UL종신전환형 계약'으로 전환하여 줄 것을 1회에 한하여 회사에 서면 등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전환이 승낙된 경우 다음 방법에 따라 전환한다.
 - 1) UL 종신전환형 계약으로의 전환은 계약변경 신청일부터 30일 이후 최초로 도래 하는 월계약해당일(이하 '전환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 2) UL 종신전환형 계약의 보험가입금액은 전환금액을 일시납보험료로 하여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 3) 계약변경 신청일 이후 전환일 전일까지 UL 종신전환형 계약 신청 취소를 할 수 있다. 다만 전환일 이후에는 전환전 계약으로의 환원은 불가하다.
 - 4) 기타 UL 종신전환형 계약의 보험금, 계약자적립액 및 해약환급금 등의 계산 및 지급에 관한 사항은 「사업방법서, 약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방법을 따른다.
- 나. '가'에 의하여 '보장형 계약'을 'UL종신전환형'으로 전환 신청하는 경우 계약자는 보 장형 계약의 피보험자를 UL종신전환형 계약의 피보험자로 또는 1)호 및 2)호에서 정한 자 중 1인으로 한다.
 - 1) '보장형 계약' 피보험자의 가족관계등록부상 또는 주민등록상 또는 기타 가족관 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상의 자녀 중 1 인
 - 2) '보장형 계약' 피보험자의 가족관계등록부상 또는 주민등록상의 배우자
- 다. '나'의 1)호 및 2)호에서 정한 자 중 1인으로 피보험자가 교체된 경우 교체 전 피보 험자 및 교체 후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가 있어야 하며, 전환일부터 교체 전 피보험자는 피보험자의 자격을 상실한다. 다만, 부가된 특약의 피보험자는 그러하

19. 유지보너스 적립서비스에 관한 사항(보장형 계약에 한함)

- 가. 보장형 계약의 경우 회사는 아래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유지보너스 발생일에 유지 보너스 적립서비스를 제공한다. 유지보너스 발생일에 제공된 유지보너스 금액은 적 용이율(계약일로부터 10년 이내에는 연복리 2.75%, 계약일로부터 10년 초과시에 는 연복리 2.0%)로 적립하며, 이를 유지보너스 계약자적립액이라 한다.
 - 유지보너스 발생일 : 계약일로부터 아래의 각 경과시점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 유지보너스 금액:

| 경과시점 | 유지보너스 금액 |
|------|---|
| 10 년 | 「주계약 월납보험료×12×10×보너스기준율 I 」에서「"10 년 경과시점의 |
| 경과시점 | 유지보너스" 발생 직전 해약환급금」을 차감한 금액 |
| 15 년 | 「주계약 월납보험료×12×보험료납입기간(년수)×보너스기준율Ⅱ」에서 |
| 경과시점 | 「"15 년 경과시점의 유지보너스" 발생 직전 해약환급금」을 차감한 금액 |

■ 보너스기준율:

| 구분 | 가입나이 | 보너스기준율 I | 보너스기준율Ⅱ |
|---------------|---------|----------|---------|
| 일반심사형 56 세 미만 | | 110.0% | 120.0% |
| 클린급시청 | 56 세 이상 | 105.0% | 115.0% |
| 간편심사형 | 56 세 미만 | 107.0% | 117.0% |
| [신편점사영 | 56 세 이상 | 102.0% | 112.0% |

- 나. '가'에도 불구하고 유지보너스 발생일에 그 직전 월의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에는 유지보너스 금액을 유지보너스 발생일에 제공하지 않으며, 연체보험료 납입일에 제공한다.
- 다. '나'에 따라 연체보험료 납입일에 제공하는 금액은 유지보너스 금액이 유지보너스 발생일에 정상적으로 제공된 것으로 가정하여 계산된 금액으로 한다.
- 라. 유지보너스 예비적립액 :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가'에서 정한 유지보너스 발생일에 유지보너스 적립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회사가 별도로 적립한 금액을 말한다.
- 마. 보험기간 중 해당 유지보너스 금액, 유지보너스 계약자적립액 및 유지보너스 예비

적립액을 적용하다가 보험계약의 변경, 일부 해지 등의 이유로 주계약 보험가입금액이 감소되었을 경우에는 변경된 시점부터 변경된 주계약 보험가입금액 및 주계약 월납보험료를 기준으로 유지보너스 금액, 유지보너스 계약자적립액 및 유지보너스 예비적립액을 적용한다.

바.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 사망 또는 계약의 해지, 연금전환특약을 통한 연금전환시에 는 유지보너스 예비적립액은 지급하지 않는다.

20. 기타사항

가. 상품명칭 운용에 관한 사항 회사는 상품명칭에 계약자가 원하는 이름이나 판매경로 등을 인식할 수 있는 용어 를 덧붙여 안내자료 및 보험증권에 기재할 수 있다.

나. 간편심사형에 관한 사항

- 1) 간편심사형은 "간편심사" 상품으로 유병력자 등 일반심사보험에 가입하기 어려운 피보험자를 대상으로 한다. 간편심사란 의적결함 및 연령제한으로 인하여 보험시장에서 소외되고 있는 유병력자나 고령자 등의 계약심사 및 건강검진의 부담을 줄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표준체에 비하여 간소화된 계약 전 알릴 의무 사항(별첨3참조)을 활용하여 계약심사 과정을 간소화함을 의미한다.
- 2) 회사는 간편심사형의 보험계약 체결시, 간편심사형과 일반심사보험의 보험료를 비교하여 안내하고, 일반심사보험의 경우 피보험자가 표준체에 해당하는 계약 전 알릴 의무 항목을 통하여 보험가입 여부에 대한 의적심사를 거쳐 가입이 가능한 상품임을 안내하여야 한다. 이때, 회사는 안내한 사항에 대한 계약자 확인(별첨 2 참조)을 받는다. 다만, 전화를 이용하여 이 상품의 보험계약을 청약하는 경우 (별첨 2) "간편심사 상품에 대한 계약자 확인"에 대하여 음성녹음으로 대신한다. 비교 대상 상품은 회사에서 판매중인 유사한 상품으로 변경할 수 있다.
- 3) 회사는 '2)'에 의하여 간편심사형과 일반심사보험을 비교 안내시, 일반심사보험은 간편심사형보다 가입금액 등 보장내용이 축소되지 않도록 운영한다.
- 4) 회사는 피보험자가 당사 일반심사보험 가입 후 3개월 이내에 간편심사형의 가입을 희망하는 경우, 동일한 피보험자를 대상으로 일반계약심사를 통하여 일반심사보험으로 가입하도록 안내한다. 다만, 일반심사보험 계약의 보험금이 이미 지급되거나 청구서류를 접수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는다.
- 5) 회사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간편심사형의 계약일부터 3개월 이내에 당사 일반

심사보험 가입을 희망하는 경우, 동일한 피보험자를 대상으로 일반계약심사를 통하여 일반심사보험에 청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다만, 본 계약의 보험금이 이미 지급되거나 청구서류를 접수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는다.

- 6) '5)'에 의하여 일반심사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이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특약 보험료 포함)를 계약자에게 돌려준다.
- 7) 간편심사형의 청약서는 일반심사보험의 청약서와 구별하기 쉽도록 별도의 청약서 (별첨 3 참조)를 사용한다. 또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별첨 3)에 기재된 청약서 보다 간소화된 내용으로 운영할 수 있다.
- (8) 간편심사형은 위험률을 모니터링, 검증하여 향후 경험위험률 산출을 위한 적정 경험통계가 집적된 경우 위험률을 재산출하여 보험료를 조정한다.

다. 계약인수에 관한 사항

- 1)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주기, 보험료 납입기간 외 가입나이, 가입한도 등 계약인수관 련 사항은 회사가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라 제한될 수 있다.
- 2) 회사는 계약 전 알릴 의무 사항 간소화를 통하여 보험요율에 이미 반영된 사항은 계약인수심사에 활용하지 않는다.
- 라. 무배당플러스연금전환특약표 및 무배당유가족연금전환특약의 적용은 다음과 같다.
 - 1) 무배당플러스연금전환특약표 및 무배당유가족연금전환특약의 보험료는 전환일 현재 피보험자의 나이에 따라 계산한다.
 - 2) 무배당플러스연금전환특약표의 5 배플러스종신연금형의 경우 보장형이며, 연금지급 개시시점을 '보험료 납입기간 경과시점' 이후부터 '보험료 납입기간 경과시점 후 5 년' 이내로 설정한 경우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다.
 - 3) 무배당플러스연금전환특약II은 전환전계약 가입당시의 약관 및 보험요율을 적용한다.
 - 4) 무배당유가족연금전환특약은 전환시의 약관 및 보험요율을 적용한다.

마. 보험가입금액에 관한 사항

1) 보장형 : 500 만원 이상

2) UL 종신전환형 : 250 만원 이상

바. 회사는 계약자가 UL 종신전환형 계약으로 전환을 신청하는 경우 계약자에게 보험료 납입이 없더라도 계약유지를 위해 해약환급금에서 월대체보험료가 공제됨을 안내 하여야 한다.

- 사. UL 종신전환형 계약의 사망보험금에 관한 사항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사망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망보험금과 해약환급금 중에서 많은 금액을 지급한다.
- 아. 보장형 계약에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때 약관 제 3 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사망보험금과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 납입이 면제된 보험료를 포함한 금액으로 특약보험료는 제외한 금액) 중 큰 금액에 사망 당시의 유지보너스 계약자적립액을 더하여 지급한다.

"해약환급금 일부지급형표 상품 가입에 대한 계약자 확인서" 서식

"보험소비자의 권익보호 및 보험상품에 대한 이해증진을 위해서 아래 사항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해약환급금 일부지급형표"은 해지될 경우 해약환급금이 적은 상품입니다.

[기준: O종(OO형), 남자, 40세, 15년납, 월납, 주계약 보험가입금액 5,000만원, 특약제외]

| 구 분 | 해약환 | 한급금 일부지급 | 급형표 | 표준형 | | | |
|------|-------|----------|-----|---------|-------|-----|--|
| 보험료 | | 0,000 원 | | 0,000 원 | | | |
| 경과 | 납입보험료 | 해약환급금 | 치그리 | 납입보험료 | 해약환급금 | 치그리 | |
| 년수 | (만원) | (만원) | 환급률 | (만원) | (만원) | 환급률 | |
| 1 년 | | | | | | | |
| 3 년 | | | | | | | |
| 5 년 | | | | | | | |
| 9 년 | | | | | | | |
| 10 년 | | | | | | | |
| 14 년 | | | | | | | |
| 15 년 | | | | | | | |
| 20 년 | | | | | | | |
| 30 년 | | | | | | | |
| 50 년 | | | | | | | |

※ 상기 환급률은 이미 납입보험료 대비 환급률 입니다.

[※ 아래 **엷고 크게 밑줄친 내용**에 보험설계사 및 계약자가 직접 자필로 기재(전자적 형태의 확인방식(화면터치 및 드래그 등) 포함)하고 서명(인)하거나 음성녹음을 통해 확인 받으시기 바랍니다.]

[모집자 확인]

● 보험설계사 <u>OOO</u>은(는) 위 내용에 대하여 보험계약자 <u>OOO</u>에게 설명하였습니다.

20 년 월 일

보험설계사

(인/서명)

[계약자 확인]

- 본인은 보험설계사 으(로)부터 위 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충분 히 <u>이해</u>한 후 중도해지시 해약환급금이 표준형대비 적은 <u>해약환급금 일부지급형표</u>을 선택하였습니다.
- "<u>해약환급금 일부지급형표"</u> 상품은 해지시 <u>해약환급금이 적으며</u> <u>저축목적으로 가입</u>할 경우 다른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20 년 월 일

계약자

(인/서명)

친권자 (인/서명) 친권자 (인/서명)

간편심사 상품에 대한 계약자 확인

- 1. 이 상품의 간편심사형은 <u>"간편심사" 상품</u>으로 유병력자 또는 연령제한 등 <u>일반심사보</u> 험에 가입하기 어려운 피보험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 2. 이 상품의 간편심사형은 일반심사보험에 가입하기 어려운 피보험자를 대상으로 하므로, <u>일반심사보험보다 보험료가 다소 높습니다.</u> 의사의 건강검진을 받거나 일반심사를할 경우 이 보험보다 저렴한 일반심사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심사보험의 경우 건강상태나 가입나이에 따라 가입이 제한될 수 있으며 보장하는 담보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 일반심사보험은 의적심사를 거쳐 가입 가능한 보험으로 회사에서 정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비교 대상 상품은 회사에서 판매중인 유사한 상품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 3. "간편심사" 상품 이외에도 현재 만성질환을 보유하고 있거나 과거에 질병을 앓은 경력이 있는 등 회사가 정한 일반심사보험 인수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해당 피보험자도 일반심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조건부특약」,「특정신체부위·질병보장제한부인수특약」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 특별조건부특약: 피보험자의 건강상태에 따라 보험료를 할증하여 인수하거나,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보험금을 삭감하여 지급하는 특약
- ※ 특정신체부위·질병보장제한부인수특약: 피보험자의 건강상태에 따라 특정 질병이나 특 정 신체부위에 발생하는 질병을 보장하지 않는 조건으로 인수하는 특약
- ※ 일반심사보험과의 보험료 비교

| 상품구분 | | 간편심사 보험 | | 일반심사 보험 | | | |
|-----------|-----------------------|----------|---------|--------------------------------|----------------------|---------|--|
| 주계약 | (무)수 | 호천사 5 배더 | 행복한 | 7 E | | | |
| 상품명 | | 종신보험 | | 좌 동 | | | |
| 상품형태 | | 간편심사형 | | | 일반심사형 | | |
| 게야스나 | 일반 상품 대비 질문항목을 간소화하여, | | | 피보험자의 | 피보험자의 건강상태 및 직업에 따라서 | | |
| 계약승낙 여부 | 지병이나 기 | 왕력이 있어도 | 도 가입할 수 | 청약에 대한 승낙을 거절할 수 있습니 | | | |
| 47 | | 있습니다. | | | | | |
| | | [기준: 해역 | 약환급금 일부 | - 부지급형ㅍ, 주계약 가입금액 각 1,000 E | | | |
| 구 분 | | | | 종신 15 년 | | | |
| | 나이 남자 여기 | | 여 자 | 나 이 | 남 자 | 여 자 | |
| L성그 | 40 세 | x,xxx 원 | x,xxx 원 | 40 세 | x,xxx 원 | x,xxx 원 | |
| 보험료 예시 | 45 세 | x,xxx 원 | x,xxx 원 | 45 세 | x,xxx 원 | x,xxx 원 | |
| 에시 | 50 세 | x,xxx 원 | x,xxx 원 | 50 세 | x,xxx 원 | x,xxx 원 | |

주) 상기 예시된 간편심사 보험 및 일반심사 보험의 보장내용은 동일하며, 주계약 및

특약의 보장내용은 상품설명서 및 약관의 '보장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 내용에 대하여 모집자는 보험계약자에게 충분히 설명하였고, 보험계약자는 설명 받은 내용을 이해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아래 **엷고 크게 밑줄친 내용**에 보험설계사 및 계약자가 직접 자필로 기재(전자적 형태의 확인방식(화면터치 및 드래그 등) 포함)하고 서명(인)하거나 음성녹음을 통해 확인받으시기 바랍니다.]

| [모집자 확인] ● 보험설계사 | | | | | 은(는) | 위 | 내용에 | 대하여 | 보험계약자 |
|-------------------------------|----|---|---|---|------|----|-----|------|--------|
| 에게 설명하였습니다 | | | | | | | | | |
| | 20 | 년 | 월 | 일 | | 보험 | 설계사 | | (인/서명) |
| [보험계약자 확인] ● 보험설계사 | | _ | | | 내용에 | | | 들었습니 | |
| | 20 | 년 | 월 | 일 | | 계약 | 사 | | (인/서명) |

계약 전 알릴 의무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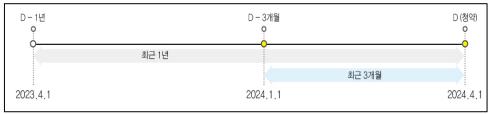
피보험자에 관한 다음 사항은 회사가 보험계약의 청약을 인수하는데 필요한 자료이므로 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아래사항에 대하여 만약 사실대로 알리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보험가입 이 거절될 수 있으며, 특히 그 내용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주계약 약관에 의해 계약이 해지되거나 보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사항"이란 계약 전 알릴 의무와 관련하여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계약의 청약을 거절하거나 보험가입금액 한도 제한, 일부 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과 같이 조건부로 승낙하는 등 계약 승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합니다.

부활(효력회복)시에는 계약 전 알릴 의무 대상기간을 「계약해당일(또는 직전 부활(효력회 복)일 이후부터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기간 과 「계약 전 알릴 의무 대상기간 (아래 질문의 최근 3개월, 2년, 5년) 중 짧은 기간으로 합니다.

이 청약서에서 '최근 ○개월 이내(◆년 이내)'는 청약일의 ○개월 전일(◆년 전일)부터 청 약일까지를 의미합니다.(예를 들어 청약일이 4월 1일인 경우 '최근 3개월 이내'는 1월 1 일부터 4월 1일까지)



현재 및 과거의 질병

- 1. 최근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다음의 의료행위를 받은 사 실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 1) 입원필요소견
- 2) 수술필요소견 3) 추가검사(재검사) 필요소견
- 4) 질병확정진단
- 5) 질병의심소견

- ※ 여기서 필요소견이란 의사가 진단서나 소견서 또는 진료의뢰서 등을 포함하여 서면 (전자문서 포함)으로 교부한 경우 또는 의사가 진료기록부 등에 기재하고 이를 환자에게 설명하거나 권유한 경우를 말합니다.
- ※ 여기서 질병의심소견이란 의사가 진단서나 소견서 또는 진료의뢰서 등을 포함하여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교부한 경우를 말합니다.
- 2. 최근 3년 이내에 질병이나 사고로 인하여 입원한 사실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 3. <u>최근 5년 이내에</u>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암으로 "진단"받거나 암으로 "입원 또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예, 아니오) (암에는 악성신생물, 백혈병 및 기타혈액종양이 포함됩니다)

외부환경

4. 귀하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 4번과 5번 관련하여, 당사가 정한 가입 불가 직종에 해당하는 경우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1) 근무처 2) 근무지역 3) 업종
 - 4) 취급하는 업무(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주십시오)
 - ※ 보험계약 체결 당시 <u>직업</u> 또는 <u>직무</u>를 사실대로 알리지 않거나 보험계약 체결 후 <u>직업</u> 또는 <u>직무</u>가 <u>변경</u>된 사실(예: 사무관리↔현장관리)을 지체없이 회사에 알리지 않은 경우 계약 해지 등 알릴 의무 위반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5-1. 현재 운전을 하고 있습니까? (예, 아니오)

5-2. "예"인 경우 운전차종(,)

1) 승용차(영업용)

2) 승용차(자가용)

3) 승합차(영업용)

4) 승합차(자가용)

5) 화물차(영업용)

6) 화물차(자가용)

)

- 7) 이륜자동차(영업용)
- 8) 이륜자동차(자가용)

9) 건설기계

10) 농기계

11) 기타(예: 폭발물, 인화물 수송차량 등)(

- ※ 기타에 해당하는 경우 차종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둘 이상의 차량을 운전하거나 하나의 차량을 둘 이상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되는 사항을 모두 기재하 십시오.
- 5-3. 원동기장치 자전거(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포함)를 사용하십니까?(다만, 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등 보행보조용 의자차는 제외합니다) (예, 아니오)
 - ※ 계속적으로 사용(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과 출퇴근용도 등으로 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하는 경우 기재하십시오.

본 질문에 '아니오'로 기재하고 보험계약 체결 후 <u>이륜자동차</u> 또는 전동킥보드 등 <u>개</u> <u>인형이동장치</u>를 포함한 <u>원동기장치 자전거</u>를 사용하게 된 사실을 지체없이 회사에 알리지 않은 경우 계약 해지 등 알릴 의무 위반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아래사항(질문 6번)은 사실과 다르게 알릴 경우 보험가입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6. 월소득(계약자 기준)

월소득 - 월평균()만원

위의 각 계약 전 알릴 의무 사항에 대한 답변 내용은 사실과 일치하며, 계약자 및 피보험자 본인이 직접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또한 귀사가 위 사항과 관련하여 필요시에는 별도의 확인을 할 수 있으며, 의사가 본인의 질병 등의 건강상태를 조회하거나 열람토록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양생명보험주식회사 귀중

계약자 성명 (인)

피보험자 성명 (인)

법정대리인(친권자) 관계() 성명 (인)

법정대리인(친권자) 관계() 성명 (인)

<법정대리인(친권자) 1 인이 서명한 경우> 본인은 다른 법정대리인(친권자) 1 인과 합의하에 공동으로 친권을 행사합니다. (인)